

## 외화증권거래설명서

- ◆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외화증권거래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규정에 의거, 당사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외화증권거래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.
- ◆ 본 상품은 일반 예금상품과 달리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, 투자로 인한 손실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.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.
- ◆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,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- ◆ 본 설명서는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법 규정에 따라 외화증권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외화증권거래의 위험성 등을 고지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교부하는 자료입니다.

- 고객님의께서는 상품 가입 前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·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-

### ▣ 유사상품과 구별되는 특징

- 외화증권거래는 고객님의 외국 거래소 시장 또는 국내 장외시장에서 외국 주식 등 외화증권을 거래함으로써 발생하는 금전의 수수를 약정하는 거래입니다.  
<예시> 고객이 국내 증권사를 통해 미국 나스닥 시장의 00주식 종목을 거래
- 국내주식거래와 비교 시 외국 통화 증권의 거래에 따른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, 증권시장 개장시간의 차이가 존재하고 국내법상의 공시 규제 등이 적용되지 않아 투자 관련 정보 접근성 및 용이성이 떨어지는 등 차이가 존재하므로 투자 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.

### ▣ 투자위험 등급 : 1등급(매우높은위험)

- \* 위험등급의 의미: 당사는 기초자산의 종류 및 원금 보장 범위 등을 감안해 투자 위험등급을 1등급(매우높은위험)에서 6등급(매우낮은위험)까지 6단계로 나눕니다. 1등급은 6단계 중 1번째 등급으로 높은 위험을 뜻합니다. 외화증권의 위험등급은 1등급(매우높은위험)입니다.
- \* 위험등급의 유의사항 : 1등급 상품은 시장 평균 수익률보다 훨씬 높은 투자수익을 추구합니다. 자산가치 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초고위험 투자성향의 고객님의께 적합합니다.
- \* 위험등급으로 정해진 이유 : 외화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은 당사 투자권유준칙 내 금융투자상품별 투자위험도 분류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합니다.
  - 해외증권의 경우 1등급을 부여한다.
- \* 단, 국가별 위험도가 상이하니 투자전 확인하시 바랍니다.

### ▣ 발생가능한 불이익 사항

- 외화증권거래에서는 증권 매매손익과 함께 통화의 가치변동에 따른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.
- 외화증권거래는 국내증권 거래와 비교 시 적절한 매매시점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

○ <예시> '24.8.5(해당일 환율 \$1=W1,200)에 뉴욕증권거래소(NYSE)에 상장된 ▲사 주식 100주를 주당 \$70에 매입(총 투자금액 \$7,000=W8,400,000)'

24.9.4에 매매결제가 이루어진 경우 손익은?

☞ **CASE① : 추가하락, 환율 유지**

**(매매손실 발생)** '24.9.4에 1주당 \$65로 하락한 경우(환율은 \$1=₩1,200 유지)

- 매도대금 : 100주 x \$65 x ₩1,200 = ₩7,800,000  
→ **외화증권 거래 손실** = 매도대금 - 매입대금 = ₩7,800,000 - ₩8,400,000 = - ₩600,000

☞ **CASE② : 추가유지, 환율 하락**

**(환차손 발생)** '24.9.4에 원/달러 환율 100원 하락(\$1=₩1,100)한 경우(주가 \$70 유지)

- 매도대금 : 100주 x \$65 x ₩1,200 = ₩7,800,000  
→ **외화증권 거래 손실** = 매도대금 - 매입대금 = ₩7,700,000 - ₩8,400,000 = - ₩700,000

☞ **CASE③ : 주가, 환율 하락**

**(매매손실+환차손)** '24.9.4에 주가 \$65, 환율 \$1=₩1,100으로 하락

- 매도대금 : 100주 x \$65 x ₩1,100 = ₩7,150,000  
→ **외화증권 거래 손실** = ₩7,150,000 - ₩8,400,000 = - ₩1,250,000 (매매손실 - ₩600,000, 환차손 - ₩650,000)

※ **주가가 유지 또는 상승하더라도 환율로 인해 손실을 입을 가능성**이 있으므로 투자 시 **주가와 함께 환율을 충분히 고려**하여 거래할 필요가 있습니다.

- 외화증권거래는 국내법령에 따른 공시의무가 적용되지 않고, 시차 및 정보전달통신 문제로 시장 및 투자증권의 시세에 영향을 주는 정보취득이 지연되거나 입수의 용이성이 떨어져 국내 증권 거래와 비교 시 적절한 매매시점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

▣ **민원·상담이 빈번한 속지 필요사항**

**Q1. 외화증권 거래 시 환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?**

외화증권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거래하고자 하는 시장의 통화로 먼저 환전해야 합니다. 당사는 외화증권투자업무 처리하기 위하여 **외국환은행에 개설한 고객 명의의 외화예금 계정 외에 회사 명의의 외화예금계정을 통하여 환전**할 수 있습니다.

※ 환율확인 -> 당사HTS 접속 후 -> 0346 고시환율 화면 확인

**Q2. 투자 가능한 외화증권의 범위는 어떠한가요?**

고객이 투자할 수 있는 **외화증권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**. 다만, 회사가 고객과 국내장외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**회사의 역외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증권**을 거래할 수 없습니다.

**Q3. 외화증권 매입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?**

국내주식 거래와 같이 **매매수수료가 발생**하며, 통상 **국내주식 거래수수료율보다 높게 책정**될 수 있습니다. 또한, **환전 시 환전수수료가 발생**합니다.

※ 수수료율 확인 -> 홈페이지([www.samsungpop.com](http://www.samsungpop.com)) -> 트레이딩 -> 해외주식 -> 해외시장안내

**Q4. 외화증권 매매 시 결제일은 언제인가요?**

**(해외증권시장 거래)** 매매주문일 다음 영업일로부터 기산하여 해당 증권이 거래된 해외 증권시장 결제기간 또는 외국 금융투자회사등이 별도로 정한 결제기간이 경과한 날로 합니다. **결제에 소요되는 기간은 국가별로 상이**하므로, **자금 운용 계획 시 유의**가 필요합니다.

**Q5. 주간거래 서비스는 어떻게 거래하나요?**

주간거래 서비스는 미국주식을 한국 주간시간에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, 일반 미국주식을 거래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HTS 또는 모바일(mPoP)을 통해 거래가 가능합니다.

▣ **금융소비자의 권리**

가. 금소법상 자료열람요구권

-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기록 및 유지·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(사본 및 청취 포함)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-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,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, 금융상품등의 관한 광고 자료,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,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,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
  -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등의 목적 및 열람의 범위가 기재된 열람요구서로 열람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**6 영업일**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.
  - 회사는 법령, 제3자의 이익 침해,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
- 나. 자본시장법상 장부열람권
- 고객은 역외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회사에게 영업시간 중에 서면으로 해당 고객과 관련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·서류(집합투자재산의 명세서, 기준가격대장, 운용내역서 및 이에 상당하는 서류, 집합투자재산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)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다. 청약철회권 행사에 관한 사항
- 이 상품은 금융소비자의 권리 중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 상품이 아닙니다.

▣ 민원/분쟁조정 및 상담연락처

이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거나 민원 상담이 필요한 경우 패밀리센터 (1588-2323, 080-911-0900) 및 홈페이지(www.samsungpop.com), 영업 지점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 만약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(1332)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
방문판매 및 유선·무선·화상통신·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해 계약한 금융상품 관련 소송 시에는 제소 당시 금융소비자 주소, 또는 거주지를 관할 법원으로 하며, 주소 또는 거주지가 불분명 할 경우 「민사소송법」의 관계 규정을 준용합니다.

I. 외화증권거래의 개요

가. 외화증권거래의 의미

- 외화증권거래란 투자자가 외국의 거래소시장 또는 국내장외시장에서 투자대상 외화증권을 거래함으로써 발생하는 금전의 수수를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.

나. 외화증권거래의 세부내용

- **(투자대상 외화증권)** 고객이 투자할 수 있는 외화증권의 범위에는 **제한이 없습니다.**  
다만, 회사가 고객과 국내 장외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**역외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증권은 거래할 수 없습니다.**
- **(투자한도 및 매매방법)** 외화증권거래의 투자한도에 대한 **제한은 없습니다.** 그러나 외화증권 투자 시 발생하는 외환거래는 외국환거래법등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습니다.

(참고) 해외 직접투자 유의사항

☞ 해외직접투자 \*에 해당할 경우 외국환거래법령(외국환거래규정 제9-5조 이하)에 따라 지정 외국환은행을 통한 사전신고 등의 의무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준수하여야 하며, 위반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및 징역·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.

\* ① 지분투자(경영 참여 목적으로 투자비율이 10% 이상이거나, 투자비율이 10% 미만이라도

임원파견,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  
② 대부투자(이미 지분투자한 현지법인에 대한 1년 이상 장기 금전대여) 등

- **(매매방법)** 고객이 외화증권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위탁하여야 합니다.  
외국집합투자증권을 매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를 통해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.

다. 외화증권 거래 절차

① 계좌개설(영업점·비대면) → ② 외화증권거래 약정 및 매매신청 → ③ 환전 및 입출금 → ④ 매매  
라. 투자계좌의 개설

- **(외화증권전용계좌 개설)** 고객이 외화증권을 거래할 때는 하나 또는 복수의 회사를 지정하여 매매 및 보관을 의뢰하여야 합니다.
- **(외화증권투자전용 외화예금계정의 개설)** 회사는 고객명의(회사 등의 명의를 부기)또는 회사명의로 외화증권투자전용 외화예금계정을 외국환은행에 개설하여 투자관련 자금을 환전 및 송금하거나 회수합니다. 따라서, 상기 외화 계정을 개설하기 위한 업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마. 외화증권의 보관

- 외화증권은 자본시장법 상 "외화증권 집중예탁제도"에 따라 고객의 권리를 보호받습니다.
- **(외화증권의 집중예탁)** 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외화증권예탁자계좌를 개설하고 **고객의 외화증권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 보관기관 중 한국예탁결제원이 선임한 외국보관기관에 집중예탁합니다.**  
※ 다만, 해당 외국의 법령 또는 관행 등으로 인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외국보관기관을 선임할 수 없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 보관기관에 집중 예탁합니다.
- **(한국예탁결제원이 선임할 수 있는 외국보관기관)** 한국예탁결제원이 외화증권거래와 관련하여 선임할 수 있는 외국보관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- ① 한국예탁결제원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의 증권예탁기관 또는 결제기관으로서 해당 외국의 정부 또는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는 기관
  - ② 상기 ①에 해당하는 기관이 출자한 기관으로서 국제예탁 및 결제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특별히 설립된 기관
  - ③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의 금융기관
    - 보관규모가 미화 100 억달러 이상의 국제증권 전문보관기관
    - 국제보관업무의 경험이 풍부하고 현지증권시장 사정에 정통한 기관
    - 국제적 또는 특정권역(대륙별)에 걸쳐 보관업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
  - ④ 상기 ①~③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으로서 특정국가에서 특화된 예탁·보관을 위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

바. 투자관련자금의 환전, 송금 및 수령

- 1) (환전·송금 등 계좌) 회사는 외화증권투자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외국환은행에 개설한 **①고객명의로 외화예금계정**외에 **② 회사 명의로 외화예금계정**을 통하여 환전·송금·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.
- 2) (환전·송금 처리주체) 회사는 외화증권의 매매 및 권리행사에 따른 원화와 외화간 환전 및 외화송금을 고객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대행하거나, 상기 1)의 회사 외화예금계정을 통하여

처리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고객은 그 내역을 지체 없이 통보받게 됩니다.

- 3) 회사는 외국보관기관에 개설된 한국예탁결제원 명의의 외화예금계정을 통하여 외화증권의 매매 또는 권리 행사와 관련한 외화를 외국으로 송금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령하게 됩니다.
- 4) 회사는 고객이 외국에서 신규로 발행되는 외화증권을 청약하고자 할 때에는 **외국의 납입은행 등에 자기명의로 직접 외화를 송금**할 수 있습니다.
- 5) 상기에 따라 외화를 송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게 됩니다.
- 6) **(외화의 수령)** 회사는 고객의 외화증권 매매 또는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수령한 외화를 상기 3)의 한국예탁결제원 명의의 외화예금계정에 예치할 수 있습니다.
- 7) 회사의 환전에 적용하는 기준환율은 HTS, MTS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※ 환율확인 -> 당사HTS 접속 후 ->0346 고시환율 화면 확인

#### 사. 외화증권거래의 결제

□ **(결제방법)** 회사는 **고객의 외화예금계정에 예치된 외국통화로 결제**합니다.

다만, 외화증권의 국내장외 거래의 경우 해당 외국통화로 직접 결제가 불가능한 때에는외화를 원화로 환산하여 결제대금에 총당합니다.

□ **(결제일)**

##### ① 해외증권시장거래

- 국내에서의 결제일은 **매매주문일의 다음 영업일(이하 약정일)로부터 기산하여 해당 증권이 거래된 해외 증권시장의 결제기간 또는 회사와 외국 금융투자회사 등이 별도로 정한 결제기간이 경과한 날**로 합니다.

※ 다만, 약정일 이후 상기 결제기간 경과전에 국내와 시간대가 동일한 해외 증권시장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외 증권시장에서의 결제일을 국내에서의 결제일로 할 수 있습니다.

##### ② 국내장외거래

- **매매주문일을 결제일로** 합니다.

#### 아. 매매 증거금 및 수수료

□ 외화증권거래시 **매매 증거금 및 수수료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**하게 되어 있습니다.

- **매매증거금 제도 :**

매수의 경우 해당시장의 거래통화만 증거금으로 사용하며, 제비용 포함 100% 징수 합니다. 단, 통합증거금 신청고객은 타 시장 통화 및 매도대금을 매수증거금으로 이용하여 사전 환전 없이 매수주문이 가능하며 자동환전일 (T+1) 에 필요한 결제 금액만큼 자동환전 처리 됩니다.

매도의 경우, 매도증권 주문수량 전부를 위탁증거수량으로 징수 합니다.

미국, 홍콩, 중국, 일본, 유럽 시장은 주식 매도 후 매도대금을 매수증거금으로 사용 가능하며, 이외 국가는 매도 대금 입금 전에 매수증거금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- 외화증권 거래수수료: 외화증권거래와 관련하여서는 해외시장에서의 매매수수료, 증권거래세, 기타부과금, 위탁 중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거래수수료의 세부사항은 HTS, MTS, 홈페이지 ([www.samsungpop.com](http://www.samsungpop.com))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- 환전수수료: 원화⇄외화 환전 시 발생하는 수수료이며, 환전수수료의 세부사항은 HTS, MTS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- 기타수수료: 세부사항은 HTS, MTS,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### 3.기 타

- 고객은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회사에게 영업시간 중에 서면으로 해당 고객과 관련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·서류(집합투자재산의 명세서, 기준가격대장, 운용내역서 및 이에 상당하는 서류, 집합투자재산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)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 그 밖에 외화증권거래에 관하여 상세한 내용은 거래 회사에게 문의하시고, 외화증권의 매매 또는 취득에 따른 매매결제, 예탁·보관 및 권리행사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한국예탁결제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또한, 거래관련 자금의 환전 등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외환심사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

## II. 외화증권거래의 위험성

**외화증권거래에서는 해당 증권의 가격변동에 따른 매매손익이 발생하는 이외에, 해당 통화의 가치변동에 따른 환위험 노출 및 투자환경의 상이 등 제반위험 요인이 국내증권거래보다 더 많이 수반되므로, 외화증권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다음의 내용을 각별히 유의하시고, 고객의 재산상황 등을 감안하여 투자결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.**

- 외화증권거래는 해당 통화의 예상치 못한 가치변동에 따라 환거래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해당통화의 가치는 금융환경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동하고 있음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- 외화증권은 국내 자본시장법령에 의한 국내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관련 정보의 접근과 취득이 제한적이고 입수가 용이하지 않습니다.
- 외화증권은 투자가능한 외화증권의 종류가 국내보다 다양하고 해당 국가의 제도, 법규 및 매매방식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개별증권의 거래에 대한 지식이 요구됩니다.
- 외화증권거래는 매매방식, 배당 및 이자의 지급방법 및 공휴일에 따른 업무일 등 해당 국가의 시장관행이 국내와는 상이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이해가 요구됩니다.
- 시차 또는 정보전달통신상의 문제로 해당 국가의 당일 시장변화와 투자 증권 시세에 영향을 주는 투자정보의 취득이 지연되어 적기의 매매시점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
- 외화증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재무관련정보 (회계처리방법, 기업평가의 관행 등)의 해석이 국내와 다를 수 있습니다.
- PTP 대상 외화증권을 거래할 경우 이익/손실 여부와 상관없이 매도금액의 10%가 현지 원천징수 될 수 있습니다.
- \* PTP(Publicly Traded Partnership) : 통상적으로 천연자원 및 부동산에 투자하는 기업의 지분으로 증권시장에서 공개적으로 거래되고 Master Limited Partnerships(or MLPs)으로 지칭
- 특히, 미국 주간 거래는 미국 정규 거래소를 통한 기존의 야간 거래와의 차이가 있으니 이하의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설명서 소비자보호검토필 제 24-0106 호(심의일: 2024.09.02)

- 미국 주간 거래 시간 중 미체결된 주문은 프리마켓 시작 전 자동 취소됩니다.

미국주식 거래가능시간 (한국 시간 기준)

※ 주간 거래 시간:

오전 10 시~오후 5 시 30 분 (써머타임 시 오전 9 시~오후 4 시 30 분)

※ 프리마켓 거래 시간:

오후 6 시~오후 11 시 30 분 (써머타임 시 오후 5 시~오후 10 시 30 분)

※ 정규장 거래 시간:

오후 11 시 30 분~오전 6 시 (써머타임 시 오후 10 시 30 분~오전 5 시)

※ 애프터마켓 거래 시간:

오전 6 시~오전 7 시 30 분 (써머타임 시 오전 5 시~오전 7 시 30 분)

- 미국 주간 거래는 정규거래소가 아닌 SEC(미국 증권거래위원회)와 FINRA(미국 금융산업규제국)가 승인한 대체거래소(ATS)를 통해 거래를 지원합니다.
- 미국 주간 거래 시 체결된 거래는 당일 밤 열리는 프리마켓/정규장/애프터마켓에서 체결된 거래와 함께 결제(T+2)됩니다.
- 미국 주간 거래는 주요 종목 (전년도 매매 상위 약 1천 종목 등)에 대해 주로 복수의 LP(유동성 공급자)를 통해 유동성(시세 및 체결지원 등)을 공급합니다
- 미국 주간 거래는 기술적으로는 대부분의 상장 종목 거래가 가능하지만, 제한적인 시장 참여자와 LP를 통한 유동성 공급 등에 따라 일부 종목의 체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, 정규장 대비 가격 변동이 크거나 가격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.
- LP는 선물 시장의 움직임 외 종목의 변동성, 유동성 및 거래와 헷징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호가를 제공합니다.
- 호가 제공의 방식과 운영 전반은 LP의 독립적인 업무로 당사와는 무관합니다.
- 분할/병합, 합병 등 일부 권리의 효력일 당일에 한해 주간 거래가 제한되며 기타 신규 상장, 종목명 변경 등의 사유로도 주간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미국 주간 거래는 대체거래소, 현지 브로커 및 시세 벤더 등의 사유로 거래의 불편 또는 장애 발생 가능성이 정규시장 거래 대비 높을 수 있습니다.

□ 외화증권거래 고객께서는 위에서 설명된 사항이 외화증권거래의 위험과 특성을 모두 설명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시고 외화증권거래의 구조 및 관련제도 등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외화증권거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III. 외화증권거래의 통지

#### 1. 주요 통지내용

- (매매성립결과 통지) 회사는 외국 금융투자회사 또는 외국보관기관으로부터 외화증권의 매매성립 결과를 확인한 때에는 외화증권의 종목명, 외화약정금액(수량×단가) 및 현지수수료·제비용(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외화증권 매매와 관련된 수수료를 포함한다)등을 포함한 총 외화결제금액, 외화환전 필요금액 등 매매성립 내용을 통지합니다.
- (권리행사 등에 관한 통지)
  - 회사는 고객의 외화증권 권리행사 내용을 한국에탁결제원으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.

설명서 소비자보호검토필 제 24-0106 호(심의일: 2024.09.02)

- 회사는 **주주총회·사채권자집회·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 또는 신주인수권행사 등 취득 외화증권의 권리행사에 고객의 의사결정 및 지시가 필요한 경우** 고객으로부터 권리의 행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.
- 회사는 발행인으로부터 교부된 통지서 또는 자료 등을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령한 때에는 **해당 수령일로부터 이를 3년간 보관하고 고객의 열람에 제공합니다.**

## 2. 통지의 시점

- (거래의 통지)** 회사는 고객의 매매거래 또는 그 밖에 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**지체 없이 통지**합니다.
  - (월별 거래현황 통지)** 회사는 월간 매매거래 또는 그 밖의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 월간 매매내역, 손익내역, 월말잔액·잔량현황 등의 내용을 **다음 달 20일까지 통지**합니다.
  - (반기별 계좌잔액·잔량현황 통지)** 회사는 반기동안 매매거래 및 그 밖에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 계좌의 잔액·잔량현황을 해당 **반기 종료 후 20일**까지 통지합니다.
  - (수시통지)** 회사는 거래인감의 변경, 증권카드의 재발급, 지점, 그 밖의 영업소간 이관·이수 및 통합계좌에서의 해제 등의 경우에 고객의 미결제약정, 현금 등의 잔액·잔량을 **지체 없이 통지**합니다.
- ※ **귀하가 통지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및 계좌현황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, 통지의 내용이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상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거래 고객센터(1588-2323) 또는 삼성증권 홈페이지([www.samsungpop.com](http://www.samsungpop.com))으로 연락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**

## IV. 외화증권거래의 계약기간 및 해지

- (계약기간)** 계약기간은 외화증권거래약정 체결 시부터 시작되며, 해지사유가 발생한 때 해지됩니다.
- (계약해지 사유)** 다음의 사유가 발생할 때 계약은 해지됩니다.
  - √ 고객이 회사에 해약신청을 한 때
  - √ 고객이 외화증권거래약정에서 정하는 중요 사항을 위반하여 회사가 고객에게 30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나,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
    - 다만, 시정이 명백히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 정도가 중하여 계약목적 달성을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때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않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.
  - √ 회사가 외국의 천재지변·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해 해외 시장거래를 할 수 없게 되어 고객에게 계약의 해지를 알린 때

## V. 기타 유의사항

불공정거래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

- 공익과 투자자 보호 또는 거래질서의 안정을 저해하는 거래(자전거래, 이상거래 등)가 확인될 시 사전 안내 후 주문 수탁이 제한 또는 거부될 수 있습니다.

**(약관· 이자율 등의 변경 및 공시)**

- 회사는 **외화증권거래약관을 변경**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회사는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30일 전에 고객이



- 본인은 주식회사 삼성증권과 외화증권거래를 함에 있어 직원과 상담하여 위에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외화증권거래의 주요내용 및 고객부담비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- 본인은 직원으로부터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20 . . . . .

서명/인)

금융소비자는 상품가입 후 불만(민원)이 있을 경우 소비자보호센터(1588-2323)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samsungpop.com)에 문의할 수 있고,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☎1332)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**【용어의 해설】**

● **주간거래서비스: 미국주식 일반종목을 국내 주간시간에 거래 할 수 있는 서비스**

- **거래시간: 오전 10 시~오후 5 시 30 분 (써머타임 시 오전 9 시~오후 4 시 30 분)**

- **외화증권: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증권**
- **고객: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4 조제 1 항에 따른 일반투자자**
- **외국회사: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**
- **해외 증권시장: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**
- **해외증권시장거래: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매매거래의 수탁을 받아 해외 증권시장에서 위탁의 중개·주선 또는 대리를 하거나 고객이 외국에서 신규로 발행되는 외화증권을 회사를 통해 청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한 거래**
- **국내장외거래: 회사와 고객이 외화증권을 국내에서 상대거래 하거나 매매의 위탁·중개에 의한 거래**
- **외국보관기관: 한국예탁결제원이 회사로부터 예탁 받은 고객의 외화증권을 외국에서 보관할 목적으로 선임한 외국의 증권예탁기관 또는 외국금융기관 등**
- **외화예금계정: 고객의 외화증권 매매 또는 외화증권에 부여된 권리행사와 관련한 외화의 예치송금·수령 및 원화와 외화간 환전을 위해 고객, 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국내외국환은행 및 외국보관기관에 개설한 외화예금계정**
- **금융투자회사의 역외펀드: 해외에 설정·설립된 집합투자기구로서 회사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 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기구**
- **외국의 납입은행: 외국에서 발행되는 외화증권에 대한 투자자금을 납입할수 있는 외국현지의 은행**
- **외국 집합투자증권: 집합투자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발행된 것**
- **전자서명: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해당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**